

# WTO체제하의 환경·무역 논의 전망



김준한 / 산업연구원  
산업환경 에너지 실장

## 1. WTO체제의 출범

지난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UR협정문이 조인됨으로써 협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1947년부터 운용되어 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앞으로 세계무역을 주관하게 될 WTO는 기존의 GATT에 비해 여러가지 측면에

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의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에 불과하여 국제무역을 규율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WTO는 법인격을 가짐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함께 세계경제를 주관하는 3대 기구중 하나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포괄하는 영역도 종래의 제조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에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장된다.

즉, WTO의 조직을 보면 기존의 GATT를 상품협정이사회란 하부기 구로 하는 동시에 서비스교역을 관리하는 서비스협정이사회(GATS)와 지적재산권교역(TRIPS)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협정이사회가 추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은 강제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GATT에서도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패널을 설치하여 검토해 왔으나 그 결과가 판정이라기보다는 견해를 표명한 수준에 그침으로써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WTO내에는 분쟁해결기구(DSB)라는 상설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법권도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속한 판정을 위해 분쟁처리기한도 설정해 두고 있다.

이처럼 무역주관기구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데다 UR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세계경제질서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유화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도 완화됨으로써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조금·지급·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국경간 이동도 자유화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즉, 국제무역의 이론적 기반이 되어온 개념도 비교우위에서 절대우위로 전환된다 할 수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는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무역 간의 관계정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환경과 무역의 관계

지구환경파괴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환경파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환경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들도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거나 생산자에게 포장물 등 폐기물의 회수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일방적인 규제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각종 조치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에는 강력한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미가입국이나 불준수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에 체결된 협약일수록 무역규제의 강도는 더해지고 있는 실정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는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무역인의 관계 정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미가입국이나 불준수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에 체결된  
협약일수록 무역규제의 강도는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다. 더우기 지난해 12월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기존의 무역규제수단들이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로 무역규제치들은 지구환경보호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단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사용해 오던 기존의 수단들을 UR의 타결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의 대체수단으로서 환경요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산이 다분히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데 1992년 11월에 펠리법안을 수정하여 야생동식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제품은 물론 어떠한 제품의 수입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규제하는 그린슈퍼301조의 도입과 해당국가에 일반특혜관세(GSP)의 적용을 중지하는 그린GSP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들이 자유무역과 상충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더구나 조치들 간에도 무역규제내용이 크게 상이한바, 이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 3. 차기라운드의 출범전망

실제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미 2~3년전부터 국제기구들을 중

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무역을 주관하고 있는 GATT는 1991년부터 무역환경작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의제는 ①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관련규정이 GATT원칙 및 규정과 상충되고 있는지 여부, ②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환경보호조치 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③ 포장물규제, 환경마크제도 등의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또한 UR협정의 조인을 위해 금년 4월에 열린 마라케시회의에서는 새로 창설될 세계무역기구(WTO)내에 무역과 환경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선진 24개국으로 구성된 OECD에서도 역시 1991년에 무역환경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자유무역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토록 하였다. 당초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6월까지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절차적 가이드라인만 보고되었다. 나머지 부분인 실체적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환경관리개념을 조직체내에의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환경영국제규격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에 더하여 선진국들은 공정무역의 대상범위를 제품은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노동, 경쟁조건, 기술 등을 국제경쟁력과 연결시키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와 함께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기라운드가 WTO체제 내에서 출범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 4. 예상되는 주요 논점

차기라운드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논의의 촛점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의 수용여부에 모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환경보전과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관계는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에 환경규제가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즉, 환경규제치는 자국산품과 수입품을 불문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경규제조치들이 무역규제효과를 가지게 된다.

PPMs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들이 공정무역의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즉, 저오염공정을 채택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코스트 부담을 유발하게 되므로 비교우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 가.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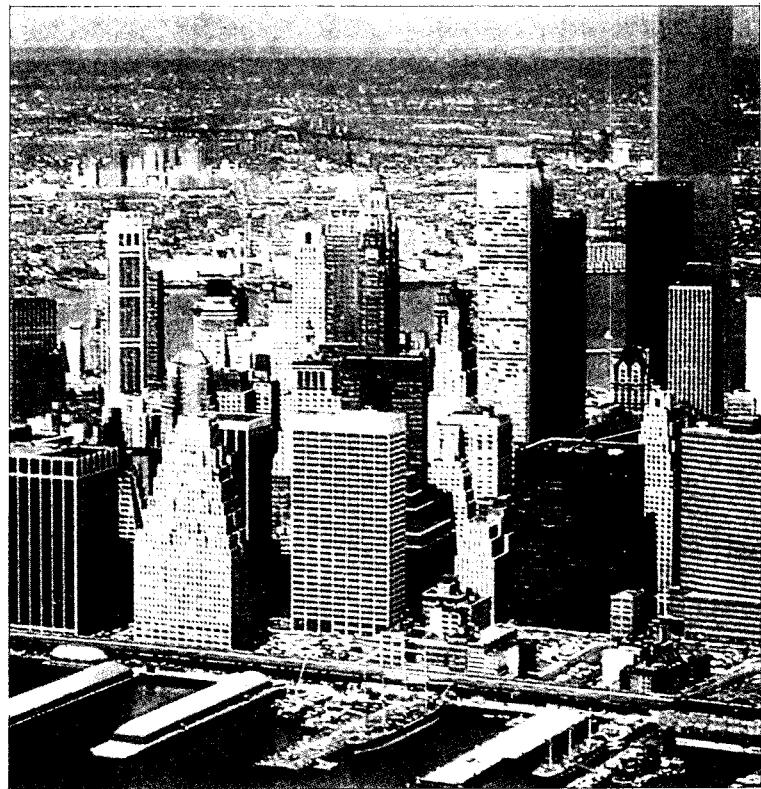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문제는 주로 OECD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관한 워크샵이 지난 4월 초순 편란드

의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워크샵에서는 산업별로 PPMs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되었다.

아직 우리에게는 PPMs 규제란 다소 생소한 개념이나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 효시로는 1906년에 체결된 「백색유황 성냥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백색 및 황색유황 성냥이 제조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 성냥의 제조,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협약국이 아니었던 미국도 이 협약의 취지에 동조하여 국내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였다.

1990년에 발생한 미국과 멕시코 간 참치·돌고래 분쟁도 PPMs 규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 분쟁은 미국이 참치 어획과정에서 유자망을 사용한 멕시코산 참치에 대해 자국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에 의거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발단되었다. 유자망 사용시에는 돌고래도 희생된다는 것이 미국이 수입을 규제한 이유였다. 즉, 공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며 GATT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GATT 분쟁 패널은 공정에 대한 규제가 현행 GATT 규정에 수용되지 않고 있는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오존층파괴방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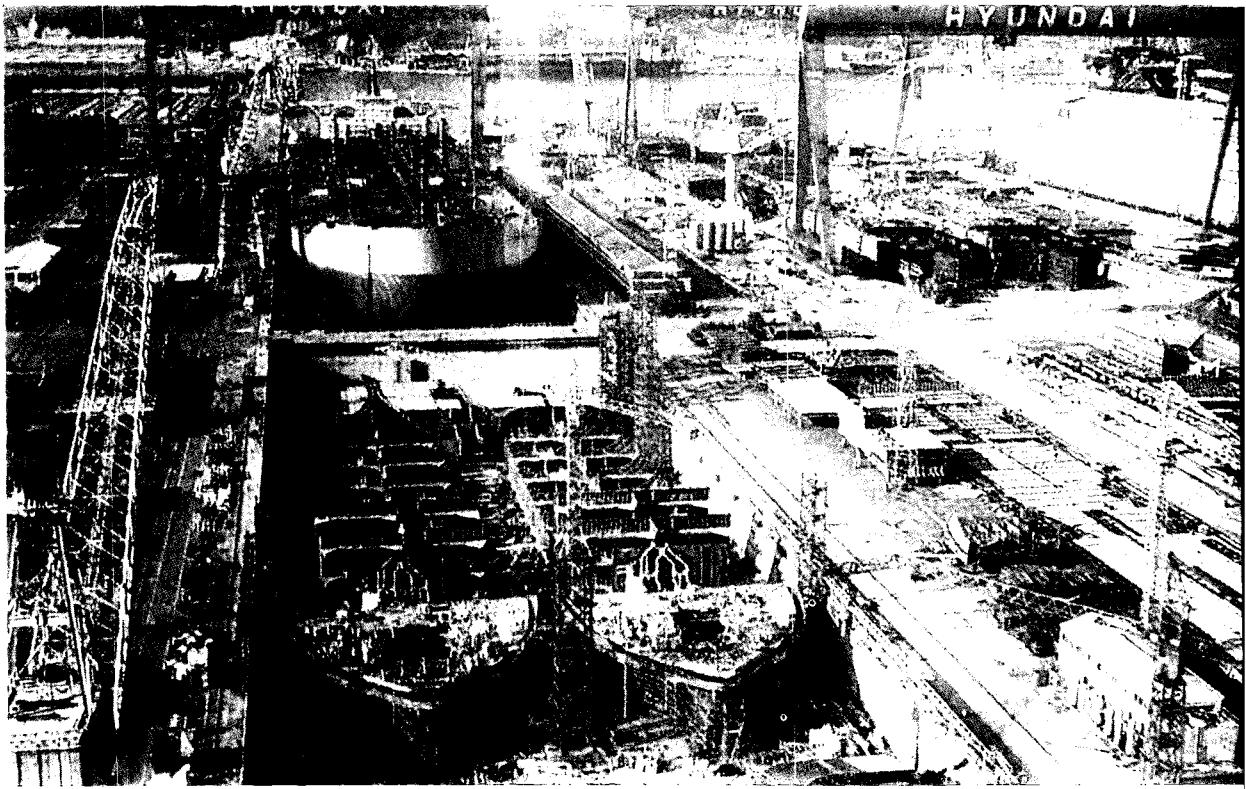
위해 채택된 몬트리올의 정서상의 규제내용이 그것이다. 몬트리올의 정서상의 규제대상은 ① CPC 등 특정 물질 자체는 물론 ② 냉장고, 에어컨 등 이들 물질을 함유한 제품, 그리고 ③ 함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산과정에서 특정 물질을 사용한 제품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세 번째 규제대상이 PPMs 규제에 해당하며 의정서 일정상 내년부터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가입국회의에서는 GATT 규정과 마찰을 이유로 잠정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 환경경영 국제규격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경영 국제규격도 PPMs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품질인증규격인 ISO 9000 시리즈에 이어 1991년부터 논의되기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에 더하여  
선진국들은 공정무역의  
대상범위를 제품은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규제치는 자국산품과  
수입품을 불문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수입상들이 자국국민들의  
환경의식문제를 들어  
해당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일것이다.**



HYUNDAI

시작한 이 규격은 경영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체제를 구축한 사업체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따라서 적용대상은 원료를 조달하는 데서부터 생산, 유통·판매, 그리고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제품주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보겠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PPMs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또한 적용업종도 제조업 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 등 서비스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SO 14000 시리즈로 지칭되고 있는 이 규격은 환경영향, 환경감사, 환경라벨링, 수명주기분석 등 7개 분야로 나뉘어져 각각의 소위원회(SC)에 의해 시안이 작성되고 있다. 원료목표시점은 분야별로 다소 다르나 대체로 향후 2~5년 이내로 되어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국제규격의 제정으로 국별로 상

이한 관련규격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증 자체도 ISO 9000 시리즈와 같이 권장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ISO 14000 시리즈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제도가 상당한 무역규제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수입상들이 자국국민들의 환경의식문제를 들어 해당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규투자가 필요하고 인증시에도 비용이 수반된다.

#### 다. 환경상계관세 부과

한편으로는 지구환경보호란 명분과 공정무역의 차원에서 환경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환경기준 차이에 따른 경쟁력격차를 보정하자

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 환경기준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각국의 환경상태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의 차이는 준수비용의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각국 제품의 생산원가 및 가격경쟁력의 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업계에서는 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한 경쟁력상의 불이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즉, 개도국의 느슨한 환경기준을 일종의 환경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요구는 무역규제조치가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과 어우러져 결국 미의회의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1991년 보렌 상원의원이 제안한

국제공해방지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기업에게 미국환경기준의 충수에 필요한 비용만큼을 상계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든 상원의원이 제안한 대기 정화법 수정안과 지구 수질정화유인법안도 미국의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방식에 의해 제조된 외국 제품에 대하여 일정율의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의회에 제안된 상기 3개 법안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환경상계관세가 그 정당성에 있어서나 시행효과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환경기준의 차이에 근거한 상계관세 부과는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각국의 정책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환경상계관세는 개도국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보다는 이들 국가의 수출수입을 감소 시켜 환경보호재원을 고갈시키는 역효과가 있다. 셋째 환경상계관세는 공해방지활동의 효율성 보다는 소요비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행국내의 비효율적인 공해방지시설 및 기술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상계관세는 교역상대국의 후속적인 보복상계관세, 상호이증관세, 무역의 투명성 저해 등을 유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축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환경상계관세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UR협정에서는 상계기능보조금을 보조금의 혜택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한정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환경보조금은 그 혜택이 특정

기업군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결과 그 영향도 대부분의 업종에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류중인 환경상계관세법안들은 미국의 수정 법주의에 따라 언제든지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이 환경상계관세를 허용하지 않는 GATT규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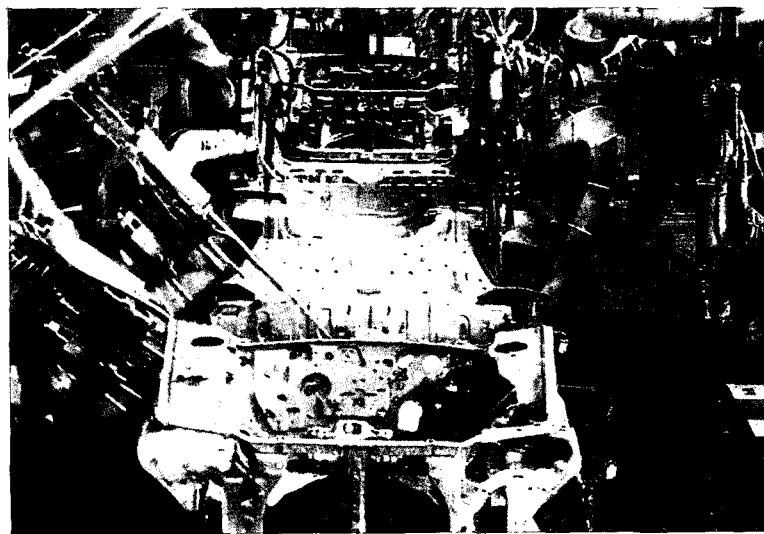
## 5.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이슈들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수출의존도가 높고 아직은 경제규모에서 중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차기라운드와 관련하여 그 자체로는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조치의 내용과 강도를 조정하는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규범이 정립됨으로써 멜리수정법의 규제내용과 같은 무원칙적이고 극단적인 규제조치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업계에서는 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한 경쟁력상의 불이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최근 미국이 환경상계관세를 허용하지 않는 GATT규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이고 있다.**

**차기라운드와 관련하여 그 자체로는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조치의 내용과 강도를 조정하는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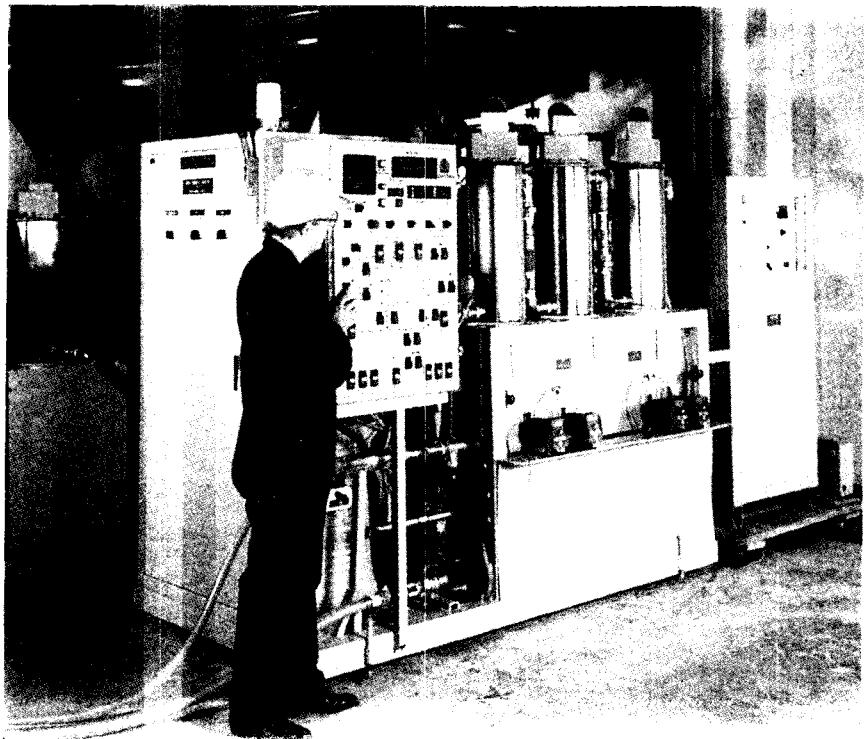
의 발동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무역의 대상범위가 확대되면 제조공정 및 기술수준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우리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타결시점 까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쟁쟁적, 일방적인 규제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크다고 하겠다.

수출 측면에서 보면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이 일반적인 무역규제나 국제경쟁력의 약화와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환경장벽의 극복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 될 경우에는 수출이 감소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는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의 배기ガ스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자동차시장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반면 여타국가들의 수출여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도가 완화될 수도 있어 오히려 환경규제를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국제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환경질의 개선을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폐적한 환경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도 중대되고 있어 환경질의 개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제환경규제는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다가오



고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오염자에게 미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내부화조치가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외부효과로만 다룰 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다.

기업들은 이제 존립의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이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SO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해방지

비 등 환경관련 부담을 추가적인 비용으로만 여겨온 관행을 지양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기술과 공해방지시설 업 등 관련산업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의 개발과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은 여타산업에 비해서도 낙후되어 있고 기자재 등의 수입의존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환경기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요가 발생된다는 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환경시장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확보는 물론 국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서도 환경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